

2025년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 모집공고문

1. 사업목적

- 해외 시장 선호를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상품 육성

2. 지원대상

-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,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주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수출(제조) 업체
- 모집규모 : 33개 업체 내외
 - 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, 수출실적 2,500만불(2년 평균) 초과기업 지원제외
 - ※ ‘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, 임산물상품화, 글로벌브랜드, 수출컨설팅 사업’ 등 통합형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 제외
 - ※ 기구축(2년차 이후) 수출통합조직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

3. 지원품목

- 신선농축산물,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
 - ※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

4. 지원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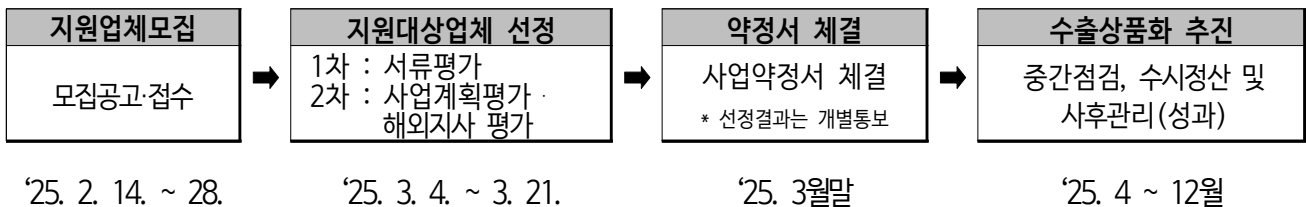
- 지원항목 : 상품개발·개선 비용, 샘플운송비 지원
 - ※ 1단계 지원업체는 해외마케팅 항목 중 샘플운송비 항목 지원 가능(해외마케팅 타 항목 지원 불가)

구 분	지원한도	지원비율	약정기간
농식품 수출업체	5천만원	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% (업체 자부담 20%)	약정체결일 ~ 2025.11.30.

5. 평가 주요내용

- 제품 주원료가 국산이며, 상품개발·개선 계획이 있는 업체 선정
 - ※ 세부평가항목은 [붙임2] 참조, 신청자격·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
6. 사업 추진일정(안)



‘25. 2. 14. ~ 28.

‘25. 3. 4. ~ 3. 21.

‘25. 3월말

‘25. 4 ~ 12월

* 추진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

** 사업관리 : 중간점검(5·8월)·수시정산 및 최종결과보고·정산(12월 초) 후 사후관리 실시

7. 사업신청 안내

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을 통한 온라인신청
- 신청방법 : 로그인(신규업체: 회원가입 필요) → 상단메뉴 ‘수출지원사업신청’ →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→ 2025 수출상품화지원사업(1단계) 신청 →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
- 신청기한 : 2025. 2. 14.(금) ~ 2. 28.(금)
- 제출서류

서 류 명	
1)	(필수)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2)	(필수) 사업자등록증 사본
3)	(필수) 국산원료 사용 증명가능 서류 * 원산지, 성분비율 등 포함 必 (원산지인증서, 품목제조보고서, 원료구매확인서, 제품 포장라벨 등)
4)	(필수) '23,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* 감사보고서,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본 * '24년도 미발행시 '22, 23년도 2개년 자료 제출
5)	(필수) '23, 24년 수출실적증명원
6)	(필수)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7)	(필수)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온라인 제출 (기제출업체 생략가능) * 온라인 제출 : [붙임3] 참조
8)	(필수)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및 농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* 인증예시 : [붙임2] 참조
9)	(선택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 사회적기업 인증서(예비포함)
10)	(선택) 수출업체 역량진단 온라인 신청 및 동의 * 신청방법 : global.at.or.kr → [역량진단] → [수출역량 자가진단] 온라인 신청 * 업체별 연1회 자가진단 참가 이력이 있어야 사업 신청 가능

- * aT One Pass(수출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) 시스템 통해 행정서류 제출 가능
- 사업자등록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(3개년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3개년), 국세 납세 증명, 지방세 납세 증명, 4대보험 완납증명

8. 문의처

- 가공수출부(061-931-0743, 0746 / product@at.or.kr)

2025. 2.



2025 수출상품화사업(1단계) 정산요령

★ 공 통 기 준	<p>① 지원대상 : 주원료가 국산인 개발상품에 대해 집행(상품화 업체가 직접 지출)한 경비에 한함</p>
	<p>② 계획변경 :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aT와 사전 협의 필요</p>
	<p>③ 지출증빙 : 사업비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(원본대조필) 첨부 - 대가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(해외: 세무당국인정영수증)로 첨부하여야 하며, 간이영수증 불인정 -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, 계좌이체 시 송금증(무통장입금증) 첨부</p>
	<p>④ 환율 및 수출실적 적용 -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최고고시 '송금 보내실 때' 평균환율 적용 *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→ 외환 → 환율/외화예금 금리 → 평균환율(기간평균, 최초) 검색 - 수출실적 인정은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, 날짜(수출신고수리일) 기준 - TRASS 혹은 수출신고필증, 외화획득용 기재구매확인서 등 지원제품이 확인가능한 증빙만 인정</p>
	<p>⑤ 중복지원 배제 :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- aT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정산 불가(예 : 통합형 지원사업 내 동일지원항목, 해외인증등록지원 등)</p>
	<p>⑥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 - 사업비는 '선 집행, 후 정산' 원칙(지원업체 대상 선금금 지급 없음) -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, 은행 송금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- 자산구매(유형·무형) 항목 불인정(홈페이지 구축, 기계류 구입 등) - 참가기업의 국내외 비용 송금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 - 1단계 업체는 '상품개발·개선 지원항목' + '샘플운송비' 항목만 집행 및 활용이 가능하며, 2단계 업체는 '해외마케팅 지원항목' + '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' 항목만 사업 추진 및 집행 가능 - '사업항목' 당 지원한도는 총 지원금액(50-70백만원)의 50% 한도 내에서 정산 가능(특정항목 과다집행 방지) * 예) 1단계 지원업체가 '포장디자인 개발' 항목에 4천만원(자부담 20% 포함) 사용시, 총 지원한도(5천만원)의 50%인 2천5백만원까지 정산가능 - 용역 수행 건의 경우 용역사의 '일반관리비'는 계약금액의 6%, '이윤'은 10%를 넘지 않도록 하며,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- 정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 별도 승인 필요 -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 불가</p>
	<p>⑦ 사업비 정산 - (공통) 지원항목 내 건별 추진 완료 시 수시정산 가능 * 계약금(선금) 등 부분적으로 정산 불가 - (공통)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콘텐츠 제작 시 K-FOOD로고 반영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 정산 가능 * (1단계) 상품개발·개선 항목 10% 이상 예산 집행 시, (2단계) 수출목표액 달성 비율에 따라 수시정산 가능 * 판촉행사, 샘플운송비 등 세부사항은 aT수출지원사업 지원항목 정산지침 준용 - 2차 중간점검까지 수시정산 실시 必 ※ 정산증빙서류는 운영기관 지정 정산용역기관에 제출하며, 1차 검토완료 건에 대해 aT 2차 검토 후 사업비 지급</p>
	<p>⑧ 공통 증빙서류 1) 용역업체와의 계약서(세부산출내역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) 2) 결과보고서(행사사진, 제품사진 등 결과물 확인가능한 증빙 필수) 3) 지출증빙</p>

※ 항목별 세부기준

지원항목	사업항목	정산기준	증빙서류
상품 개발 · 개선	기술도입비 및 제품개발 용역비	▶ 레시피 개발, 신규 기술도입 등 위한 연구용역 비용 * 용역보고서 내에 향후 수출 활용방안을 포함할 것 * 자체 또는 자회사 등 관계회사를 통한 기술개발은 지원 제외 * 자체 추진하는 제품개발에 대한 컨설팅, 자체 추진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대여 등 지원 제외 * 정보조사 등 단순 컨설팅은 지원 제외	① 연구용역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연구실행계획서 ③ 최종 결과보고서 ④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제품 시험·분석비	▶ 영양성분 분석비(국내·해외), 미생물 검사 등 지원 품목 시험·검사비 * 최대 5백만원 한도	① 시험의뢰서 - 세부산출내역, 시험품목명, 분석 성분명 포함 ② 분석결과서 ③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포장디자인 개발	▶ 포장·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* K-food로고 부착 필수이며, 수출 목표국에 로고 사용 가능 국가 1개 이상 포함 必 * 국문 디자인 개발하는 경우 약정기간 내 제품의 현지진출 증빙 제출 必 (개발제품의 1개국 이상 현지등록증빙 혹은 수출실적. 단, 샘플발송건 불인정)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결과물 * 전후사진 제출 ③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동판·금형 제작비	▶ 포장디자인 동판, 금형 제작 비용 * 포장재 인쇄, 제작비용은 미지원 * 약정기간 내 개발·개선된 디자인 건에 한함 * 최대 5백만원 한도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결과물 ③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지식재산권 출원비	▶ 특허/실용신안/상표권 출원·등록 비용(국내·해외) * 최대 1천만원 한도	① 특허법인과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특허법인 발행 인보이스 - 상세내역 포함 ③ 출원 결과 증빙 ④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해외인증 등록비	▶ 농식품 해외인증 신규(연장) 취득비용 * 최대 5백만원 한도 *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인증종류범위 준용, 연장의 경우 개발상품과 연관되어야 함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해외인증 취득 증빙 ③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해외 마케팅	샘플운송비	▶ 샘플 운송비(EMS 등 해외물류이용) * 최대 2백만원 한도	① 운송업체와의 invoice ② 수출신고필증(no commercial value 표기 건 또는 거래구분 92, 결제방법 GN에 한함) ③ 지출증빙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
※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(안)

: ISO22000, FSSC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, China HACCP, USDA NOP, EU Organic, JAS, 중국유기인증, IFOAM, Halal, Kosher, Vegan, EAC, Gluten-free, NoN-GMO

【붙임 2】 계량평가 항목(안)

항 목	평가내용	배점	평 가 점 수				
			50% 이상	40%이상	20%이상	10%이상	10%미만
사업 계획	○ 전체예산 대비 제품개발 용역 비중	5	50% 이상	40%이상	20%이상	10%이상	10%미만
			5	4	3	2	1
수출 역량	○ 최근 2개년 수출액 평균(\$)	10	10만불 이상	5만불 이상	2만불 이상	1만불 이상	1만불 미만
			10	8	6	4	2
기업 규모	○ 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(원)	5	10억 이상	10억 미만	7억 미만	5억 미만	3억 미만
			5	4	3	2	1
제품 역량	○ 인증/특허	10	○ 국내·외 인증 : 1건당 2.5점이며 2건 이상 최대 5점 ○ 명인, 전통식품품질인증 : 1개 이상 인증 보유 시 2.5점 ○ 특허(지원품목 관련, 상표, 디자인 제외) : 1개 이상 보유 시 2.5점 * 특허는 지원품목 관련 상표, 디자인은 제외				
가점 * 최대 2점	○ 사회적가치	1	○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사회적기업(예비 포함)				
	○ 정부주력품목	1	○ '25년도 10대 주력 품목 또는 미래클프로젝트 졸업품목 해당 시 가점 1점				
	○ aT시상기업	1	○ K-FOOD+ 수출탑 시상기업 * 1회 이상이면 1점				
감점	○ 기 지원업체	1	○ 지원품목 기준 최근 5년 내 1회 이상 지원 -1점 * 1·2단계 연속 선정된 경우에도 1회 지원으로 판단				

- 1) 수출금액 : 수출실적증명원,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제출 필수. 단,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업체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상 조회결과 적용
- 2) 매출액 : '24년 기준(선정시점 '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미발급시 '23년 적용). 단, 한국 기업데이터(크레탑) 정보제공업체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조회결과 적용
- 3) 인증/특허 :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, 특허만 인정(상표, 디자인 특허 인정불가)
- 4) 공인인증 예시
 - (국내) ISO, HACCP, GAP, GMP, 유기가공식품, 친환경 농산물, 가공식품KS, 지리적 표시, 유기축산물, 친환경 축산물, 한국할랄, 농업벤처 등
 - (해외) FSSC22000, HALAL(JAKIM, MUI, MUIS, IFANCA 등), 러시아GOST, 러시아CU, BEGAN, KOSHER, SQF2000, 중국보건식품, Global-GAP, 일본JAS, 미USDA Organic 등 해외유기농인증(미FDA 인정X)
(제조업체가 아닌 Trading사의 경우 인증서는 1개 제조공급업체와 그 제품에 한하여 인정)
- 5) 미래클 K-FOOD 프로젝트 졸업품목 : 샤인머스켓, 복분자즙, 유자에이드 베이스, 쌀스낵, 당조고추, 오미자, 저온압착 생들·참기름, 갯잎, 펫푸드
- 6) '25년 10대 주력 품목 : 라면, 쌀가공식품, 과자류, 음료, 인삼류, 김치, 딸기, 배, 포도, 파프리카

【붙임 3】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(aT One Pass) 이용방법

1.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(aT One Pass)

□ 시스템 소개

- 수출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과 동시에 제출하는 서비스
- 각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로 행정서류 자동 발급

□ 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

기 존	변 경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동발급·제출)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의 발급 행정기관에 접속하여 발급받고, 신청 시 개별파일 업로드 	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자동발급·제출) 수출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된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필요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아 자동 제출

- * 공통행정서류 (6종) : 사업자등록증명, 표준재무제표 (3개년),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, 국세납세증명, 지방세납세증명, 4대보험 완납증명

2. 이용방법

□ 공동인증서 준비

-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업자의 공동인증서 사용(정부24, 홈택스, 위택스 등)

□ 행정서류 발급 및 제출

- 수출지원사업 신청과정 중 간소화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제출

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

② 수출지원사업 신청



③ 사업신청서 하단의 원패스 바로가기 이동



④ 원패스 시스템 공동인증서 신규 로그인



⑤ 자동 발급/제출 목록 확인 및 신청



⑥ 원패스 제출 완료



⑦ 사업 신청내역 확인 (마이페이지-사업 신청관리)



⑧ 지원사업내 제출서류 파일 확인 (완료)

3. 세부 이용 매뉴얼 다운로드

- 수출종합지원시스템 (global.at.or.kr) ▶ 고객지원 ▶ 공지사항
 - 서류제출 간소화 매뉴얼 게시물 확인 및 다운로드

【붙임 4】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온라인 제출절차

aT 수출지원사업
무역통계제공
동의서 제출
간소화서비스

aT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인 무역통계제공
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 온라인 제출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대기발송으로 소요
 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.

Step1

<http://www.trass.or.kr/at.jsp>
접속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 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사업자번호 1068200944 입력 후 [확인하기]

Step2

사업자번호로 **동의여부** 확인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 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1068200944

[확인하기]

사업자 번호 106-02-00944
 동의여부 **대동약**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사업자 공동인증서가 없다면,
 [오프라인 동의] 우편 접수

30% B/T

인증서 신청부터 권리까지
 KTNET 공동인증센터

[오프라인 동의] 우편 접수

제출처
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5, 4층,
 한국무역통계정보원 통계서비스팀

제출서류
 1. 정보제공 동의서 [양식 다운로드]
 2. 인감증명서(필문)
 3. 사업자 등록증(사본)

Step3

사업자 **공동인증서**로 **동의**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 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

1068200944

[확인하기]

사업자 번호 106-02-00944
 동의여부 대동약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

수신 : (株)한국무역통계정보원 제공
 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련에 필요한 당사(주)수출
 통계정보를 귀사로 제공 하오니 이해와 동의 하에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구분	항목
제공목적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련
제공서 발송기관	한국무역통계정보원
제공항목	상호번호, 상호명, 주연립, 상호명, 수출자, 회사, 제조자 품명(HS CODE), 수출실적 증명, 수출금액(달러), 수입국 수출연월, 인감명, 특수인여부 등 무역통계지급
주의기간	2019년 1월 1일 ~ 영구 유지시점까지
비용유무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동의합니다. [사업자 공동인증 동의]

* 사업자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